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5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상훈, 이경선 의원 (2명)

찬 성 자 : 김제리, 이병도, 강동길,  
이영실, 김재형, 김화숙,  
고병국, 노승재, 김정태  
의원 (9명)

## 1. 제안 이유

-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개선구역의 대상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정하여 집수리사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함.

## 2. 주요골자

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동네살리기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5호).

나.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을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p> <p>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5.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p>	<p>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p> <p>①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u></p> <p>6. ----- ----- -----</p> <p>② ----- ----- ----- -----</p> <p>1. -----</p>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

2. -----  
-----  
-----  
-----  
-----